

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

※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40일
신청인	기관명			
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
	소재지			
구조·치료 대상 동물				

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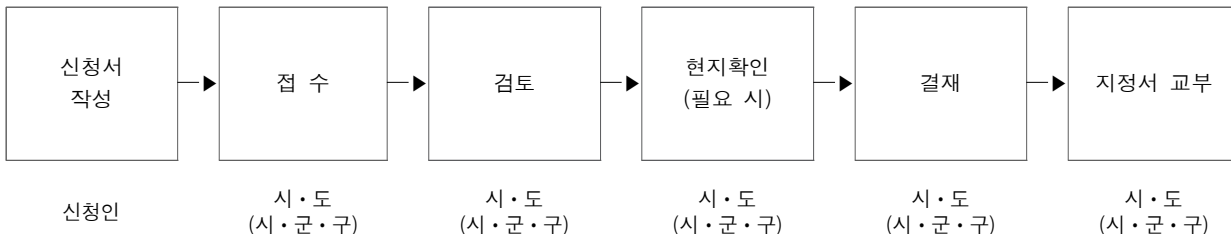
(강남구청장) 귀하

첨부서류	1. 동물의 구조·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2. 동물의 구조·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3. 동물의 구조·치료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1부 4. 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검토 시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.

처리절차



지정번호 제 호

동물보호센터 지정서

기관명

성명(대표자)

생년월일

소재지

전화번호

구조·치료대상 동물

유효기간

지정조건

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강남구청장

직인

[붙임4]

동물보호센터 사업 계획서(안)

1. 일반현황(해당사항만 기재)

- 가. 단체명(또는 상호) :
- 나. 주 소 :
- 다. 주민등록번호(법인번호) :
- 라. 대 표 자 :
- 마. 단체(법인)설립일 :
- 바. 설 립 목 적 :

2. 운영계획

- 가. 운영상 중점 착안사항
- 나. 세부운영계획

1) 시설·장비 확보내역

- 보호시설과 포획운송장비
 - 유기동물만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
 - 보호시설의 면적 등 규모
 - 유기동물만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(우리구에 배치되어 운영될 차량에 한함)
 - 포획장비의 내역(종류와 개수 기재)
 - 포획장비 세트 수량
- (뜰채, 포획그물, 이동용 케이지, 마취도구 - 우리구에 배치되어 활용될 장비에 한함)

2) 조직구성 및 인력

- 조직구성의 적정성과 인력확보
 -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인력
 - 보호인력과 포획인력의 중복비율 %
 - 유기동물 포획반 편성 현황(우리구에 배치되어 활동할 인력에 한함)
 - 포획반의 겸업 비율 %
 - 수의사면허 소유자 확보 현황

3) 유기동물 보호관리 조치 계획

- 유기동물 보호관리(신고접수부터 공고만료까지, 환축관리) 세부계획
- 공고 만료 후 동물에 대한 입양을 상생을 위한 향후계획
- 휴일 및 야간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

[붙임5]

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배점 기준표

구분	평 가 항 목	배점	세부평가항목
총계		100점	
객관적평가	소계	50점	
	시설 및 장비능력	3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물보호시설 상태 및 능력 · 동물구조차량 및 포획장비 확보 상태
	인력현황	1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의사근무, 구조인력 확보, 관리인력 확보 등
주관적평가	소계	50점	
	사업계획부문	5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·보호조치 계획의 실현 가능성(적정성) ·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· 보호기간 경과 동물의 처리계획의 적정성 · 보호센터 운영의 투명성 ·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· 민간협력(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계획 및 실효성)

[붙임6]

강남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표

□ 평가대상 기관(단체) :

구분	평가 항목	세부평가 항목	배점	세부배점	점수
합 계			100점		
소계			50		
객관적 평가	시설 및 장비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물보호실(사육실) 상태 및 능력 (기준면적 대비 능력평가) · 지정공모시 자치구의 전년도 연간보호두수대비 지정하는 동시보호두수에 대한 면적대비 평가) 	25	기준면적의 130%이상 확보(22~25점)	
				기준면적의 120%이상 확보(20~21점)	
				기준면적의 110%이상 확보(18~19점)	
				기준면적의 100%이상 확보(16~17점)	
				기준면적의 100%미만 확보(15점 이하)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물구조차량 확보상태 · 냉난방장치차량 확보(0.6점 가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대당 0.2점 가점 · 포획장비 확보상태(0.8점 가점) (포획망, 포획틀, 블로건, 이동케이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확보장비 종류별 0.2점 · 확보계획(예정) 상태는 최하점 부여 ※ 가점한도 : 1.4점 	10	3대이상 보유(8~10점)	
				2대 보유(7점)	
				1대 보유(6점)	
				★ 가점()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조인력(2년이상 구조인력 수) · 2년 미만 경력자인 경우 1점 감점 평가 · 미경력자는 최하점수 부여 	5	4명이상(5)	
3명(4)					
2명(3)					
1명(2)					
인력 평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인력(동물보호, 사무관리) · 구 지정인력 기준 확보율 	5	150%초과(5)	
				150%이하(4)	
				125%이하(3)	
				100%미만(2)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근수의사(진료업무 경력 평가) 	5	3년이상(5)		
			2년이상(4)		
			1년이하(3)		
			비상근(2)		

		소계	50점		
주관적 평가	사업 계획 부문	-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·보호조 치계획의 실현가능성(적정성)	10	매우우수(9~10점)	
				우수(7~8점)	
				보통(6점)	
				미흡(5점)	
		-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	10	매우우수(9~10점)	
				우수(7~8점)	
				보통(6점)	
				제외(5점)	
		- 보호기간 경과동물의 처리계획의 적정성	10	매우우수(9~10점)	
				우수(7~8점)	
				보통(6점)	
				제외(5점)	
		- 보호센터 운영의 투명성(위원회 설치 운영 및 일반인 접근용이성 등)	10	매우우수(9~10)	
				우수(7~8)	
				보통(6)	
미흡(5)					
-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	5	매우우수(5)			
		우수(4)			
		보통(3)			
		미흡(2)			
- 민간협력(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계획 및 실효성)	5	매우우수(5)			
		우수(4)			
		보통(3)			
		미흡(2)			

강남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 기관(단체)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평가하고 그
결과를 제출함.

20 년 월 일

평가위원 :

(서명)

[붙임7]

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평가표

[객관적(정량적)평가]

평가자 : 소속- 직- 성명- (서명)

연번	신청 기관(단체)명	① 시설 및 장비능력(35점)		② 인력평가(15점)			가산점 (0.6점)	총 점 (50점)
		동물보호시설(사육실) 상태 및 능력 (25점)	동물구조 차량 확보상태 (10점)	구조인력 (5점)	관리인력 (동물보호, 사무관리) (5점)	상근수의사 (5점)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
※ 자치구 담당자 작성용

[붙임8]

평가대상(동물보호센터)별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집계표

[주관적(정성적)평가]

평가대상(기관<단체>명) :

연번	평가위원별 항목별	사업계획분야					합계 (50점)	
		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·보호조치계획의 적정성 (10점)	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(10점)	보호기간 경과동물의 처리계획의 적정성 (10점)	보호센터 운영의 투명성(위원회 설치 운영 및 일반인 접근 용이성 등) (10점)	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(5점)		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계획 등 민간협력부분 (5점)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총점								
평균점수								

[붙임9]

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집계표

[객관(정량)적 평가 + 주관(정성)적 평가 산술평균]

연번	신청 기관(단체)명	객관적(정량적) 평가 (50점)			주관적(정성적) 평가 (50점)	⑤ 총 점 (③+④) (100점)	순위
		① 시설 및 장비능력 평가 계 (35점)	② 인력평가 계 (15점)	③ 소계 (50)	④ 사업계획 평가 평균 계 (50점)		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
20 . . .

위원장 :

서명

[붙임10]

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평가순위

[객관(정량)적 평가+주관(정성)적 평가 산술평균]

순위	신청 기관(단체)명	객관적(정량적) 평가 (50점)			주관적(정성적)평가 (50점)	합계 (총점) (③+④) (100점)
		① 시설 및 장비능력 평가 계 (35점)	② 인력평가 계 (15점)	③ 소계 (50)	④ 사업계획 평가 평균 계 (50점)	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
20 . . .

위원장 :

서명

[붙임12]

지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서약서

본인은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「지정 동물보호센터」 선정을 위한 「지정 평가위원회」 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대상 동물보호센터의 관계서류를 인수·검토함에 있어 이를 복제, 대여, 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관리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평가기준, 평가내용,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, 평가대상 동물보호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또한, 평가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평가위원 : (서명)

강남구청장 귀하

[참고자료 1]

	평가위원 자격	
<p>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 준용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2.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. 「동물보호법」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촉을 받은 사람4.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<p>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2.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		

[참고자료 2]
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표 4]

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(제1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진료실, 사육실,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나.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,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.
- 다.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. 다만, 운동장은 제외한다.
- 라.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.
- 마.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2. 개별기준

- 가. 진료실에는 진료대,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·장비를 갖추어야 하며,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나.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)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.
 - 2)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3)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, 직사광선,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다.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) 독립된 건물이거나,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.
 - 2)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,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,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.
 - 3)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,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 4)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라.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,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
- 마. 진료실,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1)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,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.
 - 가) 소형견(5kg 미만): 50 × 70 × 60(cm)
 - 나) 중형견(5kg 이상 15kg 미만): 70 × 100 × 80(cm)
 - 다) 대형견(15kg 이상): 100 × 150 × 100(cm)
 - 라) 고양이: 50 × 70 × 60(cm)
 - 2)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.
 - 3) 시설의 재질은 청소,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,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 - 4)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,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.
 - 5)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.
- 바.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,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.

[참고자료 3]

[별표 5]

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(제19조 관련)

1. 일반사항

- 가.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,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나. 동물은 종류별, 성별(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),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(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), 공격성이 있는 동물, 늙은 동물, 어린 동물(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.
- 다. 축종, 품종, 나이,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,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라.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마.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,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, 방문시 방문자 성명, 방문일시, 방문목적,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.
- 바.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. 개별사항

- 가.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, 구조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나.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,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(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).
- 다.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,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,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라.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,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,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 된다.

- 마.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며,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바.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,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처리한다.

(참고자료 4)

평가기준 산정 기초자료

1. 동물보호실 : 연간 발생두수의 10%이상을 동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

가. 기준 면적 산정방법 : 소형견+중형견+대형견 필요면적의 합계

1) 소형견(5kg이하) : 연간 발생두수 X 10% X 60% X 0.35m²

2) 중형견(5~15kg) : 연간 발생두수 X 10% X 30% X 0.7m²

3) 대형견(15kg이상) : 연간 발생두수 X 10% X 10% X 1.5m²

나. 구조차량 : 냉방시설을 갖춘 차량에는 가산점 부여

(냉방차량을 갖춘 경우 차량당 0.2점 추가)

2. 인력평가

가. 상근수의사 : 의사로서 진료업무의 경력(연수)를 합한 수

나. 구조인력 : 2년이상 유기동물 구조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구조 인력의 총수

다. 관리인력 : 동물보호관리, 미용, 청소, 사무관리 등 총 가용 인력수
[총인력 ÷ (연간 발생두수 X 0.1 * 30마리) X 100]

3. 사업계획 평가

유기동물 구조, 보호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,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

4. 입양 확대

유기동물 입양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

○ 평가방법

- 객관적 평가 : 동물보호센터 지정업무 담당자

- 주관적 평가 : 평가위원